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22년 5월 2일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1219]

merrymaids KOREA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8.11.28] <http://merrymaids.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5.12]

[메리메이드]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04. 16.

(주)메리메이드 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48(굿잡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77-994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58-327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사업운영팀 1577-994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2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4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7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메리메이드 코리아	메리메이드	서울 강남구 역삼로 148 1층(굿잡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1.09.29	2001.05.26	김호영	1577-9944	02-558-3277
	법인등록번호	170111-0197641	사업자등록번호	514-81-4062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주)메리메이드 코리아	메리메이드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48(굿잡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호영	1577-9944	02-558-327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배우자	(주)메리메이드 코리아	메리메이드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48(굿잡빌딩)		
			감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희숙	1577-9944	02-558-327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메리메이드”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메리메이드	미국 서비스마스터사의 가정집청소 브랜드
상 호	메리메이드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merry maids KOREA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22414-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663,284	8,282,991	-7,619,706	1,926,569	-222,900	-267,196
2023년	561,642	8,708,250	-8,146,608	1,512,482	-469,733	-526,902
2024년	771,292	9,209,405	-8,438,113	1,880,009	-210,620	-291,50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직영점매출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호영	대표이사	2003.03.31.~ 현재	(주)브레인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5.03.21.~ 현재	(주)에스엠텍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01.01.01.~ 현재	삼원산업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01.05.26.~ 현재	(주)메리메이드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오희숙	감사	2005.05.25~현재	(주)메리메이드코리아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7	0	7

※ 전 사업연도 말(12월) 근거자료이며 별첨 6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37류	2010.09.02 출원 2011.12.05 등록	출원 제4120100022565 등록 제4102224140000	김호영	2031.12.05

- 1)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인 **김호영으로부터** 상표 사용을 승낙 받아 위 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사용기간까지 당사는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메리메이드] 가맹사업 현황

1. 메리메이드를 시작한 날: 2001년 5월 26일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가맹사업 예정 중입니다.

2. 메리메이드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메리메이드 코리아	메리메이드	김호영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48 (굿잡빌딩)

3. 메리메이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메리메이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가정집청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메리메이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1		1	1		1
서울	1		1	1		1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메리메이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2024	0	0	0	0	0	0

○ 당사는 가맹사업 예정중입니다.

6. 메리메이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메리메이드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예정중입니다.

8. [메리메이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메리메이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4	없음	해당사항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예정중입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메리메이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1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40,633	40,633		

광고	소개					
	TV					
	라디오					
	인터넷					
판촉	소개					
	판매촉진	연중	(비공개)	(비공개)		인터넷을 통한 판촉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강남 대로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	02-3472-86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메리메이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2)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해당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메리메이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 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8,700			
가 맹 금	가입비 (Initial Fee)	"가맹본부"의영업표지·운영권리·영업지역허락 및 부여	11,000	계약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성격의 금전
	개점시 운영 및 노하우 제공		1,100	계약체결일	개점 시작 1일 전 계약해지	개점 이후 소멸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개점시 영업활동 지원		2,200	계약체결일		
	기타 운영 매뉴얼 제공		1,100	계약체결일		
	입지선정 조언		1,100	계약체결일	없음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멸 비용 반환되지 않음
	소계		16,500			
교육비			2,200	계약체결일	훈련 시작 1일 전 계약해지	훈련이 시작 되면 반환되지 않음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3,000	계약 체결 일	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채권 채 무 정산 완료 (상계처리) 후 잔액 지급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 업자의 1회 평균 계속가맹 금 등의 대금 (청소용품 대금 포함)의 2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내역	금액 (단위: 천원)	비고
가입비(Initial Fee)	11,000	VAT 포함
개점시 운영 및 노하우 제공	1,100	VAT 포함
개점시 영업활동지원	2,200	VAT 포함
기타 운영 매뉴얼 제공	1,100	VAT 포함
입지선정 조언	1,100	VAT 포함
교육비	2,200	VAT 포함
계약이행보증금(현금)	3,000	VAT 없음
합계	21,7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5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2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2,000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가맹본부	9,900	660	내부인테리어 공사시작3일이 후	공사 전 계약취소	49.53㎡기준3.3㎡늘어날때 마다660천원추가부담
간판	가맹본부	1,980				5m기준(채널 sign)
차량 랩핑	가맹본부	1,320				차량1대기준
청소장비	가맹본부	4,400		물품공급1일이 전	장비 미 공급시	청소 기본 장비 일체
초도물품 (청소용품)	가맹본부	3,300		물품공급1일이 전	물품 미 공급시	청소용품 및 소모품 일체
세탁기	가맹본부	1,100		물품공급2일이 전	물품 미 공급시	청소 기본 장비 일체
별도금액	자체조달	차량,냉난방,전기공사,철거공사,급배수공사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리메이드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적합 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메리메이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 분할·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속가맹비(Running Royalty)	가맹본부	매월 총 매출액의 9%	익월 5일	후불로 반환 없음		가맹점의 월매출산정은 1일~말일 VAT 포함 기준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광고시행 후	광고 필요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판촉시행 후	판촉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없음		P35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설 치 전 100 %	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보수 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 당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특별 훈련비(파견)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 당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 후5일 이내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POS 및 ERP 사용료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 급 기 일 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없음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현재까지 가맹점이 없으므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 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1회	문의:본사 (1577-9944)
각종 장비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청소장비 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1회	문의:본사 (1577-9944)
청소용품, 소모품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청소용품 및 소모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분기별1회	문의:본사 (1577-9944)
가맹본부 운영지침 준수	타사 제품 취급, 운영 매뉴얼의 이행여부, 교육·훈련 등 점검	분기별1회	문의:본사 (1577-9944)

※ 당사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활동을 위하여 귀하에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협약하여 결정				
재계약비	3,500,000원	재계약후 즉시	재계약 취소시	소멸성 비용	
추가 훈련비	협의	교육시작 7일전	교육시작 1일전 계약 해지	교육 개시 이후	추가 교육 필요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가맹계약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재계약 가입비가 발생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메리메이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메리메이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각종 매뉴얼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

(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50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조로 각 사유에 대하여 일금 일억원 (₩100,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일금 일십만 원(₩100,00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메리메이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021년 차액가맹금 수취 내역이 없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 예정으로 2024년도 공급가격의 상·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청소용역 서비스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청소용역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청소용역 서비스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크린베스트 (정기서비스)	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② 판매를 원할 경우 본사와 협의 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2024.12.31. 기준
크린퍼펙트 (대청소/비정기)			
크린이사 (이사청소/비정기)			
크린입주 (입주청소/비정기)			
베이비홈케어 (비정기)			

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청소용역 서비스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청소용역 서비스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서비스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물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메리메이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별도)

서비스 종류와 사이클		서비스요금 권장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고
		20~30 평대	40~50 평대	60~70평 대	80~90평 대	100평대 이상		
크린베스트 (정기서비스)	주1회	180 ~	210 ~	240 ~	270 ~	300 ~	월별로 홈 페 이 지 에 공지	2024.12.31 기준
	2주1회	198 ~	231 ~	264 ~	297 ~	330 ~		
	4주1회	234 ~	273 ~	312 ~	351 ~	390 ~		
크린퍼펙트 (대청소/ 비정기)	아파트	630 ~	735 ~	840 ~	1,050 ~	1,260 ~		
	주택	693 ~	808 ~	924 ~	1,155 ~	1,386 ~		
크린이사 (이사청소/ 비정기)	아파트	630 ~	735 ~	840 ~	1,050 ~	1,260 ~		
	주택	693 ~	808 ~	924 ~	1,155 ~	1,386 ~		
크린입주 (입주청소/ 비정기)	아파트	420 ~	630 ~	735 ~	840 ~	945 ~		
	주택	462 ~	693 ~	808 ~	924 ~	1,039 ~		
	새집증후군	240 ~	480 ~	720 ~	960 ~	1,200 ~		
	입주+새집	528 ~	888 ~	1,164 ~	1,440 ~	1,716 ~		
베이비홈케어 (비정기)	아파트	819 ~	955 ~	1,092 ~	1,365 ~	1,638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가정집 청소 서비스	메리메이드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가맹점 소재지 기준 인구 10만명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지물로 상권이 단절되는 경우를 종합하여 신규 “메리메이드”의 출점 위치를 정한다(지형지물은 산, 하천, 10차선도로이상, 공원, 지하철, 철로, 담벼락, 고가도로 등을 말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메리메이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까지 가맹점이 없으며, 따라서 [메리메이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현재까지 당사는 가맹점이 없으므로, 동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오늘의집	www.ohou.se	크린이사청소 크린입주	가맹점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롯데몰	www.lotteon.com		
	쓱닷컴	www.ssg.com		
홈쇼핑	없음			
전화권유판매	없음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해당없음	95%	0%	5%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메리메이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7조 1항 가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7조 1항 나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7조 1항 다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7조 1항 라호
○ [메리메이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7조 1항 마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7조 1항 바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11조6항. “가맹본부”가 지정한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명칭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 명칭 등 사용 제11조10항. 부정한 목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영업상 신뢰를 훼손한 경우 제27조5항. 최초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청소용역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8조2항. “가맹본부”의 규제 및 지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제31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POS에 가맹점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제35조2항. “가맹본부”가 공급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청소용품을 취급한 경우, “가맹본부”는 청소용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40조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청소용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및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청소용품 및 기타 비품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 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 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라) “가맹본부”의 청소용품 및 청소장비에 관한 품질기준을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청소장비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43조1항. 제정된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미 준수. 제45조2항.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할 경우 제50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48조1항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②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8조2항 가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8조2항 나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8조2항 다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8조2항 라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48조2항 마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8조2항 바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8조2항 사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8조2항 아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한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8조2항 자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8조2항 차호

5) 상품공급의 제한 조치

- ① 당사는 상기 4)(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 절차)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예고한 후 상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상기 4)(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 절차)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상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 과

정에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 할 시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①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②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개점시 발생하는 개점시 운영 노하우 제공. 개점시 영업활동지원. 기타 매뉴얼 제공 비용.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③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①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을 제외한 대리행사 및 위탁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상속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한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① 당사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과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특수 관계인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②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③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정집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해당 없음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메리메이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AM: 08:00~17:00 ※ 종료시간은 가맹사업자 자율사항이며 계약시 별도 협의	주 5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당사의 규정상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를 가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사업자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Quality (서비스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 시스템 확인 → 자점 매입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Service (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고객 접대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주일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Cleanliness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 확인 → 청소 현황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주일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 ①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③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메리메이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

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 점부담액 제시(명세 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의 50%	할인금액의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 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①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②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52조 및 다음과 같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50조 [가맹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조로 각 사유에 대하여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일금 일십만 원(₩1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시)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2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10(14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4 ~ 4(2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알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 영업장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부 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 급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 련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 련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사업운영팀 (1577-9944)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당사는 메리메이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이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메리메이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전)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크리닝 기술 등)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20일(160시간) (점주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수 교육
	개점 전 서비스 교육			필수 교육
신서비스 교육 (개점후)	서비스 제공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 별 교육	서비스에 따라 상이	신서비스 출시 시, 필수교육
보수교육	크리닝 기술동향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 별 교육	3일 (연 회)	필수 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 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 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메리메이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0일(160시간)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24시간)	상황에 따라 다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신서비스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서비스 교육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서비스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역삼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48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3년 8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880,00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운영팀](tel:1577-9944)(1577-994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tel:044-200-4239)(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mailto:help@ftc.go.kr)(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merrymaids.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자료 (2022, 2023, 202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필수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1) 가맹본부는 위 필수 품목리스트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 품목 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첨5] 직. 가맹점 현황

1. 직영점 현황

순 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개시일
1	서울	본점	서울 강남구 역삼로 148(굿잡빌딩)	1577-9944	2001.05

[별첨6]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II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교육 . 훈련프로그램

비밀유지 약속

상기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약속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맹 본부	:	(주)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